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22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및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제도 개요

□ 추진근거

- 「조달사업법」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1항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2026.1.2.)
-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해양수산부훈령 제663호, 2022.9.13.)

□ 주요내용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 공공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2.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기업

○ (신규지정)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완료평가 결과, **성공 또는 완료** 통보를 받은 기술

**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정기간 연장)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연장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신청

○ (규격추가·변경)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된 경우(**규격추가**) 또는 기존 혁신제품의 제품명·설명 등 단순 변경된 경우(**규격변경**)

□ 신청대상 제품

○ (신규지정)

- 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②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지정기간 연장(1차))

- ① (대상) 해양수산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② (필수요건) 아래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가.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기본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혁신제품 관련)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③ (제외요건)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과거 포함)이 있는 경우

○ (지정기간 연장(2차))

- ① (대상) 해양수산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② 공공성 요건
 - 아래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혁신제품 관련)
-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불임의 '조건부 신청 협약서 (서식6)'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단, 혁신성 평가 결과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공공성 요건 증빙 제출)**

③ 혁신성 요건 ※ 공공성요건 충족 대상, 조건부 신청대상에 한해 평가 예정

-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❶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❷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결과판정
❶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적/부
❷ 기술 탁월성 평가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적/부
	기술의 진보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적/부
	기술의 확장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적/부

❶ 유사기술 여부 평가 ^{해당 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정 양식 및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의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 평가 시 반영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지식재산처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적절성 확보 예시]

예시 1) 조사범위 : 국내 선행기술로 한정하여 조사한 보고서 대비 해외 선행기술까지 조사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2) 조사방법 : 무료 특허검색 플랫폼(KIPRIS 등)만을 단순 활용 하지 않고, 다양한 특허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이행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3) 조사결과 : 조사결과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예 : 일부 적용, 판단 불가 등) 혁신성 평가 시 활용이 제한되는 보고서 대비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제시(예 : 선행기술과 유사, 선행기술과 차별됨 등)된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해당 예시는 단순예시이므로, 신청 기업이 해당 기술의 특성, 행정소요(비용·시간)등을 고려하여 선행기술조사 수준 결정 필요

②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 (결과판정) 유사기술 여부 검증을 통과하거나 기술 탁월성 각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의 2/3가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통과

* 평가위원 2/3가 각 평가항목(기술의 ①격차·②진보·③확장)을 적합으로 판정

④ 연장신청 제외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 (규격추가·변경)

- 기존 지정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 등이 추가^{규격추가}되거나 제품명·설명 등이 변경^{규격변경}된 혁신제품

* 추가 예정인 제품의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6. 8. 7.(금) ~ '26. 9. 7.(월) 15:00까지

○ (접수기간) ①신규지정, ②지정기간 연장, ③규격추가 변경 별 접수기간 중 신청

- ① (신규지정) '26. 8. 7.(금) ~ '26. 9. 7.(월) 15:00까지
- ② (지정기간 연장) '26. 8. 7.(금) ~ '26. 9. 7.(월) 15:00까지
- ③ (규격추가·변경) '26. 8. 7.(금) ~ '26. 9. 7.(월) 15: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신청 후 확인전화 요망**

- (신청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
전산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구 분	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등록방법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등록 매뉴얼	○ (조달업체 등록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 (115번 게시글) ○ (물품식별번호 관련)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 (122번 게시글)
문의처	○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전산접수 방법 안내

<http://badabom.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혁신제품 신청접수(혁신제품→신청 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 제출서류 등록 시 해당하는 란이 없는 경우, 기타항목에 압축파일로 제출

** 문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2-3460-0397)

□ 신청서류

- (제출방법) 아래의 ①신규지정, ②지정기간 연장, ③규격추가 변경 별로 제출서류를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에 업로드

① 신규지정

연번	제출서류	서식	구분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신규1	필수
②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신규2	필수
③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필수
④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포함) - 일반제품, 소프트웨어 양식 확인 후 해당 양식 작성	신규3	필수
⑤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해당시
⑥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	해당시
⑦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	해당시

②-1 지정기간 연장(1차)

연번	제출서류	서식	구분
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연장1	필수
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연장2	필수
③	신청자격 증빙자료	(3-1) ^{비고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1개 이상 제출 필수
		(3-2) ^{비고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3-3)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3-4) ^{비고4} 구매확약서	
④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장터(ppi.g2b.go.kr) - 혁신제품 전용물 - [지정서]지정정보조회	-	필수
⑤	기술입증 자료목록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특허 등) 첨부	연장5	필수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혁신제품 관련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서,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②-2 지정기간 연장(2차)

연번	제출서류		서식	구분
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연장1	필수
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연장2	필수
③	신청자격 증빙자료	(3-1) ^{비고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연장3	1개 이상 제출 필수
		(3-2) ^{비고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3-3)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3-4) ^{비고4} 구매확약서	연장4	
④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장터(ppi.g2b.go.kr) - 혁신제품 전용몰 - [지정서]지정정보조회		-	필수
⑤	기술입증 자료목록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특허 등) 첨부		연장5	필수
⑥	조건부 신청 확약서 * 상기 3번 신청자격 항목을 혁신성 평가 결과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충족 시킬 수 있는 경우		연장6	해당시
⑦	제품설명서		연장7	필수
⑧	선행기술조사서 ^{비고5}		-	해당시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혁신제품 관련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5)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지식재산처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
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
실용신안 제도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②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되어야함

④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③ 규격추가·변경

연번	제출서류	서식	구분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변경 등록 신청서(기존 FT1일 경우 사용)	추가 1-1	필수
	혁신제품 규격추가변경 신청서(기존 FT3일 경우 사용)	추가 1-2	
②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③	제품 규격서(추가변경) * 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	추가2	필수
④	혁신제품 제품화 확인 검토서	추가3	필수
⑤	혁신제품 규격서 신규대조표(추가변경)	추가4	필수
⑥	신청기업 서약서(추가변경)	추가5	필수
⑦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추가 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생산 확인 등의 자료	추가6	해당시

□ 심사·평가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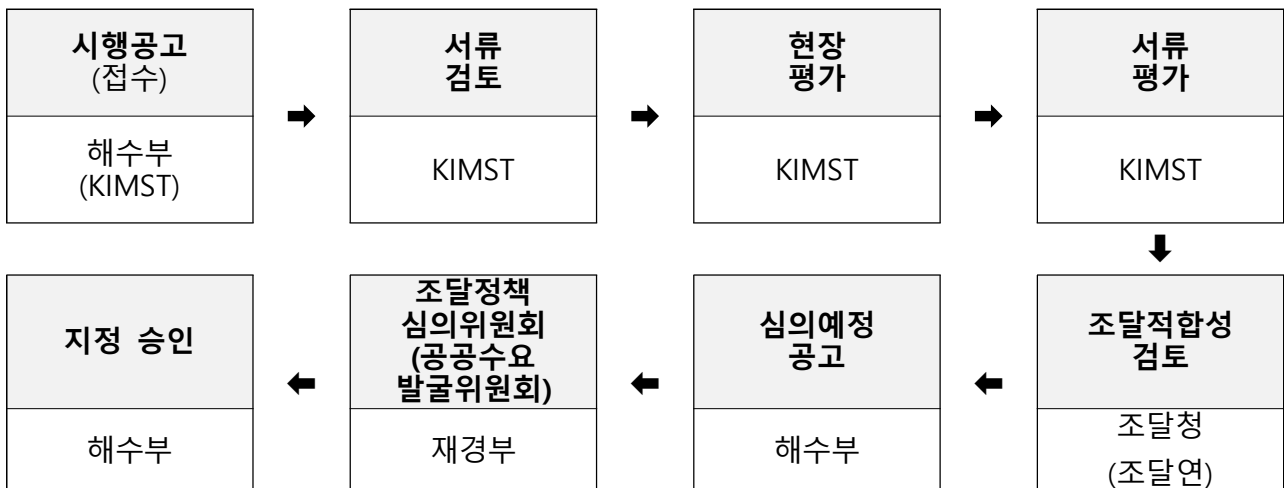
-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3. 추진 및 평가절차

※ 혁신제품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 절차 등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 신규지정

○ 지정절차



○ 평가방법

-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② (현장평가)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
- ③ (서류평가)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을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종합평가점수)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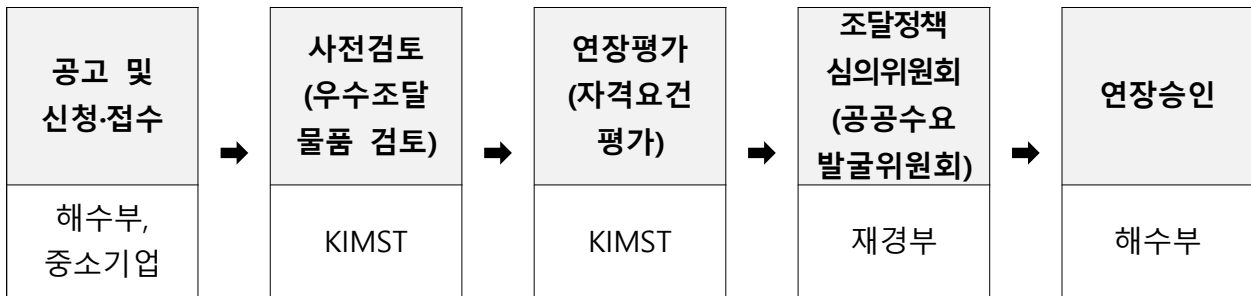
- ④ (조달적합성 검토)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

※ 조달적합성 검토 후 부적합 시 심의 대상 제품 제외

- ⑤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 지정기간 연장(1차)

○ 지정절차



○ 평가방법

①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검토

* 지정된 혁신제품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제외요건 미해당 여부 확인

- (우수조달물품 검토) 동일 세부품명·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 물품 지정여부 확인(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연장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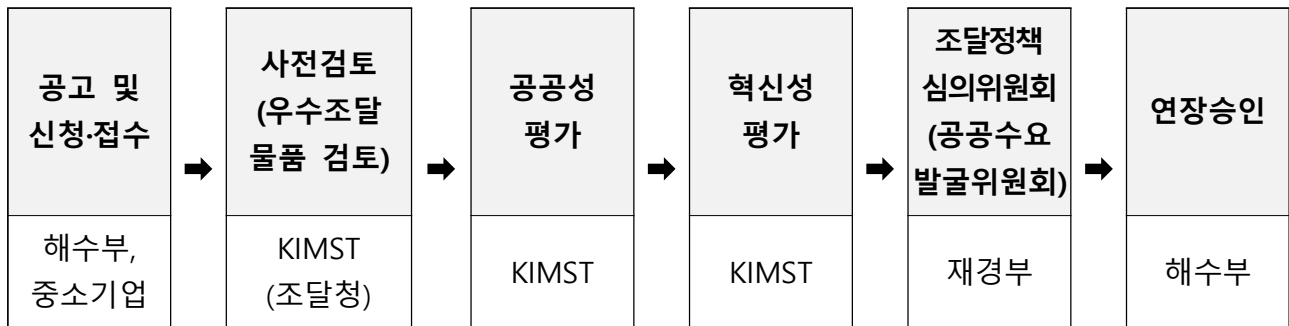
② (연장평가) 공공부문 매출액 발생 여부, 공공부문 매출 계약체결 여부, 경진대회·혁신 관련 중앙관서 시상·표창 등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장평가 실시

③ (연장 심의) 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혁신제품 연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대상 최종확정

④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최종연장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유효기간 갱신)

□ 지정기간 연장(2차)

○ 지정절차



○ 평가방법

①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검토

* 지정된 혁신제품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제외요건 미해당 여부 확인

- (우수조달물품 검토) 동일 세부품명·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 물품 지정여부 확인(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연장 제외)

②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 공공성 평가: 공공성 요건 항목 중 1가지 이상 만족여부 판정
- 혁신성 평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 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 여부 판정
- 추가 공공성 평가: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로 '공공성 평가' 생략 대상에 대한 추가 공공성 평가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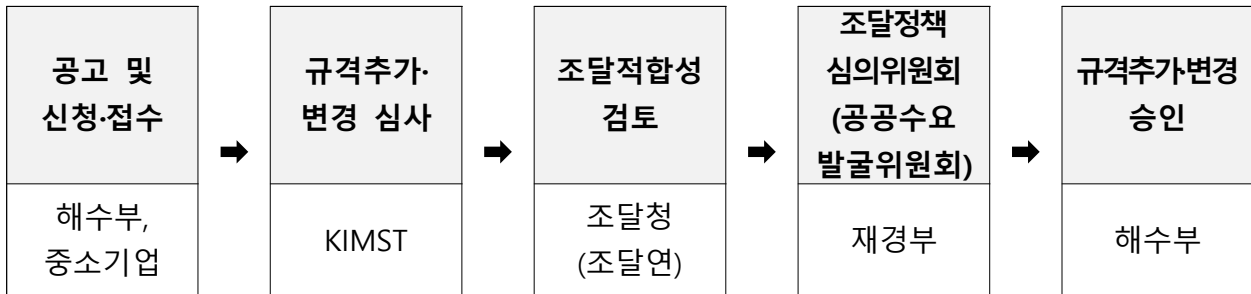
※ 혁신성 평가 결과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공공성 요건 증빙 제출, 미제출 또는 공공성 요건 충족 불가 시 평가 부적합으로 연장불가

③ (연장심의) 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혁신제품 연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대상 최종확정

④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최종연장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유효기간 갱신)

□ 추가등록(규격추가·변경)

○ 지정절차



○ 평가방법

① (규격추가·변경 심사) 심사위원회는 규격추가 모델의 핵심성능의 유지 (제품의 성능 및 기술 동질성 등) 및 생산실태를 확인하거나 제품명·설명 등 변경 사항 확인을 위한 심사를 진행

- 규격추가 심사는 현장심사로 진행
- 규격변경 심사는 대면심사로 진행(다만, 변경사유에 따라 서면심사로 진행될 수 있음)
-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함

② (조달적합성 검토) 규격추가·변경 대상의 공공조달 시장진입을 위해 전 반적 제반사항 충족여부 검토

※ 조달적합성 검토 후 부적합 시 심의 대상 제품 제외

③ (심의) 규격추가·변경 대상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최종 의결

- 규격변경 심사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기타사항) 최초 규격추가·변경 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 신청은 1회로 제한됨

4. 평가기준

□ 신규지정

구분	평 가 기 준
현장 평가	1. 제품의 확인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서류 평가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10)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 ·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나. 공공구매 필요성 (10)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 현안의 시급성 (10)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0)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2. 시장성(20) 가. 기대 시장규모 (10)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 나. 타 산업 파급성 (10)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구분	평 가 기 준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 혁신성 (40)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1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1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연장(1차)

- (필수요건) 아래의 '가'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시상·표창한 것을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해수부) 제품으로써 공공기관이 구매 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제외요건)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舊 FT1) 혁신제품에 적용된 R&D 결과물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舊 FT3)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정기간 연장(2차)

- (공공성 평가 요건) 아래의 '가'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연장 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1차 연장 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1차 연장 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조달 경진대회 -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시상·표창한 것을 지정부처 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 단,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필수적 으로 제출해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 (혁신성 평가 요건)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결과판정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 조사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적/부
② 기술 탁월성 평가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적/부
	기술의 진보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적/부
	기술의 확장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적/부

- (제외요건)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 규격추가 · 변경

구분	평 가 기 준
현장 심사	1. 핵심성능 유지여부 ○ 추가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핵심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장/생산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3. 등록상품 생산실태 ○ 직접생산, 외주가공 부분 실태 및 외주 생산비율 현황

* 규격추가의 경우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규격변경의 경우 대면심사 진행(단, 규격변경 사유에 따라 서면심사 진행)

5. 문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051-773-622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신청 · 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02-3460-0397 (kjs1112@kimst.re.kr)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별첨1] 혁신제품 신규지정 신청서류

[별첨2-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류(1차)

[별첨2-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류(2차)

[별첨3]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변경) 신청서류